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2026. 2.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하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6-4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6년 1월 16일(금)
라. 회부일자: 2026년 1월 20일(화)

2. 제출사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 추진 필요성

- 기존 위탁 운영 및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 시설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최초운영권 5년, 서울시 지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규모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비고
			면적(m ²)	정원(명)	
1	꿈빛	백범로31길 7, 103동 1층(공덕동)	182	30	
2	다원	독막로 192(신수동)	420	55	
3	해솔	서강로 75-16, 1층(창전동)	200	30	
4	산들	대홍로 24길 24(염리동)	545	80	
5	해들	승문16다길 10-5(염리동)	229	30	
6	샘물	방울내로 21(망원동)	624	90	
7	공덕	효창목5길 18(공덕동)	417	49	
8	행화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아현동)	321	55	
9	새빛	백범로31길 8, 202동 1층(공덕동)	187	30	

○ 위치도

1	꿈빛	2	다원
			
3	해솔	4	산들
			
5	해들	6	샘물
			
7	공덕	8	행화
			
9	새빛	10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연번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비고
1	꿈빛	2026. 01. 19. ~ 2031. 01. 18.	
2	다원	2026. 02. 01. ~ 2031. 01. 31.	
3	해솔	2026. 03. 01. ~ 2031. 02. 28.	
4	산들	2026. 06. 01. ~ 2031. 05. 31.	
5	해들	2026. 06. 01. ~ 2031. 05. 31.	
6	샘물	2027. 01. 01. ~ 2031. 12. 31.	
7	공덕	2027. 01. 01. ~ 2031. 12. 31.	
8	행화	2027. 01. 01. ~ 2031. 12. 31.	
9	새빛	2025. 09. 01. ~ 2030. 08. 31.	중도포기로 인한 재위탁

※ 새빛: 기존 수탁체의 운영 중도 포기로 신규 수탁체를 선정(기존 수탁기간: 2021. 3. 1. ~2026. 2. 28.)

바.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5. 12. 31. 기준)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계	국비	시비	구비
1	꿈빛	187,889	9,526	125,367	52,996
2	다원	298,678	75,906	144,696	78,076
3	해솔	219,130	9,479	135,901	73,750
4	산들	368,057	12,269	248,869	106,919
5	해들	183,794	9,217	122,450	52,127
6	샘물	525,704	121,021	272,384	132,299
7	공덕	331,439	84,041	161,889	85,509
8	행화	414,528	108,784	197,945	107,799
9	새빛	138,813	4,568	94,934	39,311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신규 설치 및 기존 위탁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꿈빛, 다원, 해솔, 산들, 해들, 샘물, 공덕, 행화, 새빛)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검토 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 및 보육교직원 관리 등을 포함함.
- 위탁기간은 각 시설별로 5년으로 제출되었으며,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일정 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한 운영체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적정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¹⁾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 중 일부(꿈빛, 해솔, 다원)는 이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재계약 운영체로 선정된 바 있음.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 동의는 운영 개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절차가 선후 관계에 맞게 이행될 필요가 있음.

1) 제28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교육체육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결과 보고서(2025.12.1.~2026.1.31.)

□ 보육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25. 12. 17.(수) 15:00~18:00
- 장 소 :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
- 인 원 : 보육정책위원 11명

시설명	위탁체	심의결과	위탁기간	비고
꿈빛어린이집	김은자(개인)	선정	'26. 1. 19. ~ '31. 1. 18.	재계약
해솔어린이집	김은희(개인)	선정	'26. 3. 1. ~ '31. 2. 28.	재계약
다원어린이집	킨더슬레교육재단(단체)	선정	'26. 2. 1. ~ '31. 1. 31.	재위탁

(2) 성과평가 관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같은 조 단서 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외부 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평가 자료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 결과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로 갈음하는 것은 제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각 시설별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로서, 안전한 보호·양육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보육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적인 보육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위탁체 선정, 회계관리, 보육교직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의 투명성 또한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있음.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보육서비스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온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주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4) 새빛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쟁점 및 제도적 검토

- 한편, 새빛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수탁체의 운영 중도 포기로 인해 신규 수탁체를 선정한 사안으로, 구의회 동의의 기산 시점을 기준 위탁 개시일(2021. 3. 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 개시일(2025. 9. 1.)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재위탁·재계약 시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새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비고
새빛	2025. 09. 01. ~ 2030. 08. 31.	중도포기로 인한 재위탁

※ 기존 수탁체의 운영 중도 포기로 신규 수탁체를 선정(기준 수탁기간: 2021. 3. 1. ~ 2026. 2. 28.)

- 해당 시설은 기존 수탁체의 운영 중도 포기에 따라 신규 수탁체를 선정하고, 재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 기존 수탁체에 대한 구의회 동의가 2021. 3. 1.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 기존 수탁체의 운영 중도 포기로 보고를 통한 새로운 위탁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2025년 9월 1일 재위탁 시점을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재위탁 시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위탁 당시 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조례상 의회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조례 단서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안에서 해당 기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쟁점이 존재함.
- 집행부는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운영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금번 구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구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개별 법령 및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고정되어 운영되는 구조인 반면,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라는 기준을 전제로 의회 동의 시점을 설정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같은 장기·정기 위탁 사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의회 통제 장치의 작동 시점이 실제 재위탁 주기와 어긋나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새빛어린이집 사례와 같이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 필요 여부가 반복적으로 해석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향후 어린이집 위탁사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참고: 조례 규정 비교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예산정책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기획예산과)
<p>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p> <p>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u>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개정 2021.5.6.></p>	<p>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p> <p>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u>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개정 2023. 3. 9.></p> <p>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9.></p>

다. 종합의견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서, 본 동의안의 제출 배경 및 법적 근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민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용 승계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구조와 현행 민간위탁 조례 간의 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보육정책과는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서인 예산정책과와 협의하여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2. 6. 22., 2024. 6. 27.〉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 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2020.7.9. >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9. >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8.5.3. >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제21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 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 구의회 동의 (P47) ≫

구 분	재위탁(공개모집)	재위탁(수의협약)	재계약
①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지속필요성(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		
② 구의회 동의		<p style="text-align: center;">구의회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 조례 §6① 의회 동의안 제출 ▶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 구의회 동의 배제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심의	-	<p style="text-align: center;">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수의협약 균가사유 심의 	<p style="text-align: center;">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성과평가 결과 심의 ▶ 시정요구 결과 반영 ▶ 재계약 적정성 심의
④ 수탁기관 선정		<p style="text-align: center;">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
⑤ 재위탁·재계약 협약체결			<p style="text-align: center;">재위탁·재계약 협약 체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p>
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p>
⑦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점검(감독), 감사: 필요 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반기별 1회) 이상 ▪ 성과평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 재위탁·재계약: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 재계약: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